

자활의 꿈! 미소금융이 있습니다

## 미소금융중앙재단

110-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136 삼공빌딩 7층 TEL (02)2084-7942 FAX (02)2084-7990  
복지사업자지원부 부장 이규욱 (담당) 사원 김유석 (e-mail : jombekys@mif.or.kr)

문서번호 : 휴재 2015 -1312

시행일자 : 2015. 11. 3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 경영기획 담당 부서장

제 목 : **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보험 보험가입 지원 결과 통지**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09년도부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3. 2015년도 강남구청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지원 분야 : 장애인복지시설보험 가입 지원

나. 지원 대상 :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장애인복지시설

다. 보험 계약 관리

- 재단 소액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중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며, 주간사\*에서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

\* 삼성화재해상보험(주)

라. 보험 계약 기간 : '15.10.31(토)~ '16.10.31(월)

마. 상품 보장 내용

- 보장 내용 요약본(붙임2) 참고

※ 보험 계약 체결 후 주간사에서 해당 시설 앞으로 보험증권을 발송시  
동 요약본을 첨부할 예정

- 붙 임 : 1.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원대상시설 명단 1부.  
2. 장애인복지시설보험 보장 내용 요약본 1부. 끝.

**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**  
(휴면예금관리재단)



##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주요 보장 내용

- 상품 성격 : 패키지(Package)보험, 1년 단위 갱신
- 계약자 : 미소금융중앙재단(휴면예금관리재단)
- 피보험자 : 장애인복지시설
- 수익자 : 시설 및 시설 이용자(장애인, 시설 방문객 등)

※ 해당 시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는 자(장애인 포함)는 배상책임보험 보장에서 제외

구분	보장 내용
재물 손해 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건물, 시설, 집기 비품 등에 대한 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재, 폭발, 낙뢰,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건물, 시설, 집기비품 등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(임차시설일 경우 건물은 제외)</li> </ul> </li> </ul>
배상 책임 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설소유관리자배상 : 1인당 3억원/1사고당 3억원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설 이용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 예시) 시설 내 물청소 중 장애인이 미끄러져 부상</li> </ul> </li> <li>● <u>치료비(구·내외) : 1인당 100만원/1사고당 500만원 한도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보험자(시설)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도, 시설 내·외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보상 예시) 공원에서 프로그램 진행 중 장애인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부상</li> </ul> </li> <li>● 음식물배상 : 1인당 1천만원/1사고당 1천만원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설에서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시설 이용자가 입은 신체 장애에 대한 보상 예시) 시설 내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 장애인이 식중독에 걸림</li> </ul> </li> <li>● 가스배상 : 1인당 8천만원/1사고당 3억원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설에서 가스를 사용 및 관리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여 시설 이용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 보상 예시) 가스폭발로 인해 장애인이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음</li> </ul> </li> <li>● 화재배상 : 1사고당 1억원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험자가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, 화재가 일어나 임대인에게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예시) 시설내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한 건물 일부가 파손</li> </ul> </li> </ul>